

서울고등법원 2023. 7. 20 선고 2023나2008677(본소), 2023나2008684(반소) 판결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 부당이득반환 등]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우지민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7. 20.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가합540839(본소), 2022

가합549284(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038,640,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1쪽 표 아래 2행의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8521)”을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8521, 위 항소심 판결은 2023. 4. 27.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1쪽 표 아래 7행의 “건축물”부터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건축물 마감재료 미설치(건축법 제52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위반), 미관지구 후퇴선 건축자재 등 적치(도시계획조례 제46조 제1항 위반)’를 위반사항(이하 ‘이 사건 위반사항’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하고,”

○ 제1심판결 13쪽 1행 “이다.” 앞에 “]”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7쪽 7행 “위반” 뒤에 “)”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1쪽 19행 “공사를 중단한”을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도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6쪽 9행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김영현, 판사 조 인